



고양시체육회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스포츠클럽 등록제 시행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록 절차 안내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스포츠클럽 제정 및 법률 시행(2022.6.16.)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록 절차를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요

- 1) 스포츠클럽 등록 시스템 도메인명 : <https://sportsclub.sports.or.kr/rmng>
- 2) 운영개시일 : 2022. 6. 16.(목)
- 3) 등록방법 : 스포츠클럽 등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접수 진행하며, 첫 등록이 시작되는 6월은 6. 16.(목) ~ 6. 24.(금)에 접수 진행

붙임 스포츠클럽 등록 업무 매뉴얼 1부. 끝.

고양시체육회장



수신처 54개 종목단체

담당자 한용한

경영지원팀장 *이우진*

체육과장 *이성현*

(전결) 사무국장 *이성현*

협조자 *이우준*

시행 고체 2022 - [017] (2022 . 6 . 16) 접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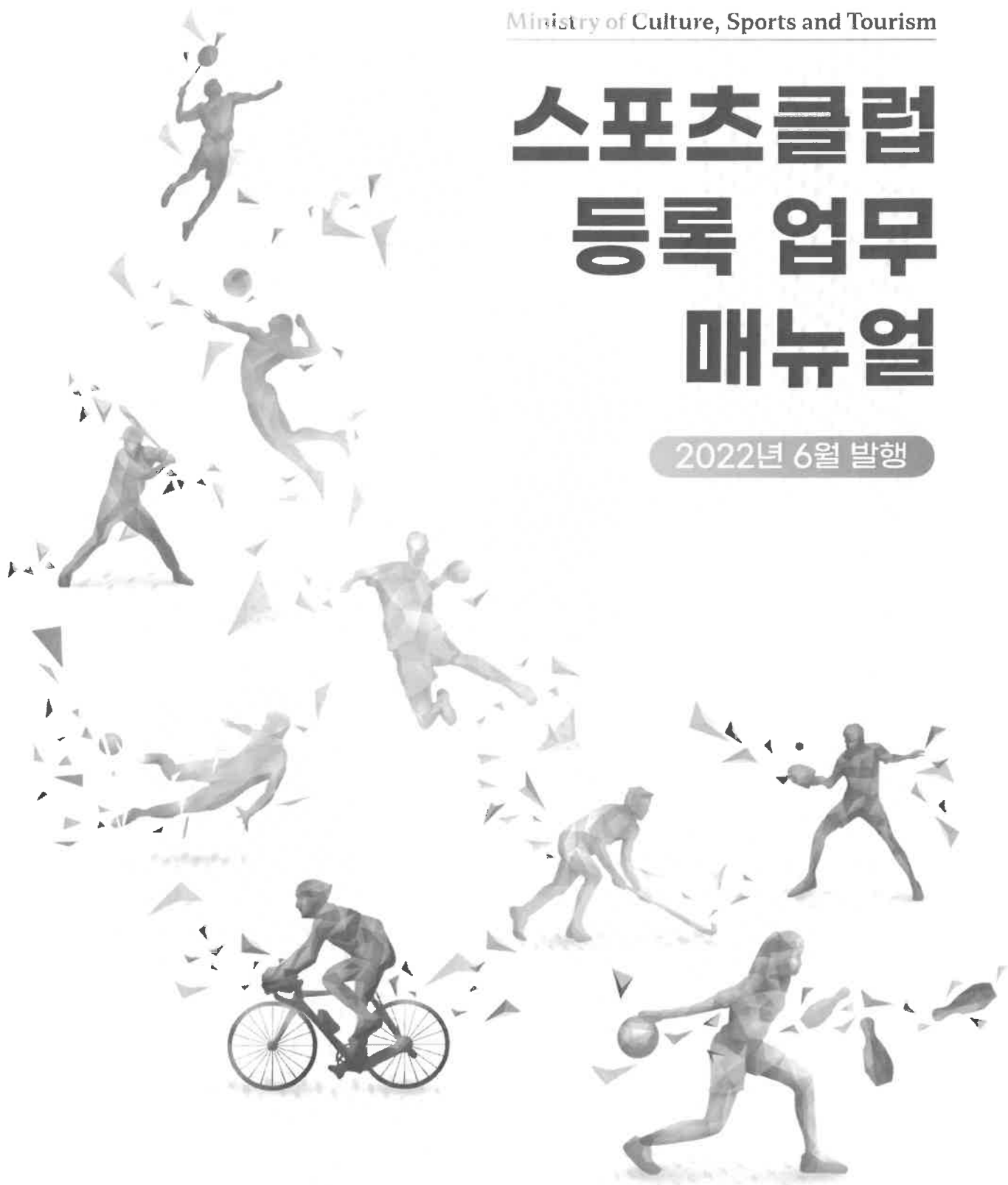
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 고양종합운동장 내 / www.goyangsports.com

전화 031-918-0169 / 전송 031-918-0183 / E-mail gks12gks@naver.com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스포츠클럽 등록 업무 매뉴얼

2022년 6월 발행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 등록 업무 매뉴얼

2022년 6월 발행

C o n t e n t s

I. 매뉴얼 작성 배경	5
II. 스포츠클럽 등록제 시행	6
1. 스포츠클럽 정의	
2. 스포츠클럽 등록제 개념	
3. 스포츠클럽 등록 요건	
1) 정관	
2) 조직도	
3) 연간운영계획서	
4) 종목별 회원명부	



Ⅲ. 스포츠클럽 등록 담당자별 업무	11
1. 스포츠클럽(신청인)	
2. 지방체육회 (시·군·구체육회 또는 시·도체육회)	
3. 지방자치단체(시·군·구담당자)	
Ⅳ. 스포츠클럽 등록 취소	14
Ⅴ. 스포츠클럽 변경 신고	15
Ⅵ. 스포츠클럽 사용료 감면	16
Ⅶ. 협조사항	17
Ⅷ. 참고사항	19

[별지]	20
별지1.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별지2. 스포츠클럽 등록증	
별지3. 정관(안) 예시	
별지4. 스포츠클럽 운영계획서 작성 예시	
별지5. 조례(안) 예시	

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등록 페이지	31
--------------------------------	----

I

매뉴얼 작성 배경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스포츠클럽법 시행(2022.6.16.)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스포츠클럽 등 단체에 대해 등록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하기 위함

■ 스포츠클럽법 시행(2022.6.16.) [2021.6.15. 제정]

- 법 시행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스포츠클럽의 등록 업무와 관련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원칙 및 기준, 처리 절차를 규정
- 이해관계자들의 신규 업무에 대한 원활한 추진과 혼선 최소화 도모

■ 표준 업무 처리절차를 통한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화 도모

- 스포츠클럽 등록 업무와 관련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방식을 마련하여 업무처리 소요시간 단축, 실수 방지 등 업무 생산성 제고

■ 매뉴얼 활용방법

- 스포츠클럽 등록 업무 추진 시 분야별 적기이행 및 업무기준으로 활용
- 전직자 및 신규직원에 대한 빠른 업무숙지 등 교육 자료로 활용

■ 관련 법령

스포츠클럽법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 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단체로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스포츠클럽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스포츠클럽 등록제 시행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1. 스포츠클럽 정의

☞ (클럽 정의) 「스포츠클럽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스포츠클럽'이라 함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

 관련법령	스포츠클럽법 [시행 2022. 6. 16.][법률 제18252호, 2021. 6. 15.,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스포츠클럽 등록제 개념

☞ (클럽 등록제 개념) 지역사회 내에서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가 효율적인 체육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스포츠클럽법」 조항에 근거한 설립 요건을 갖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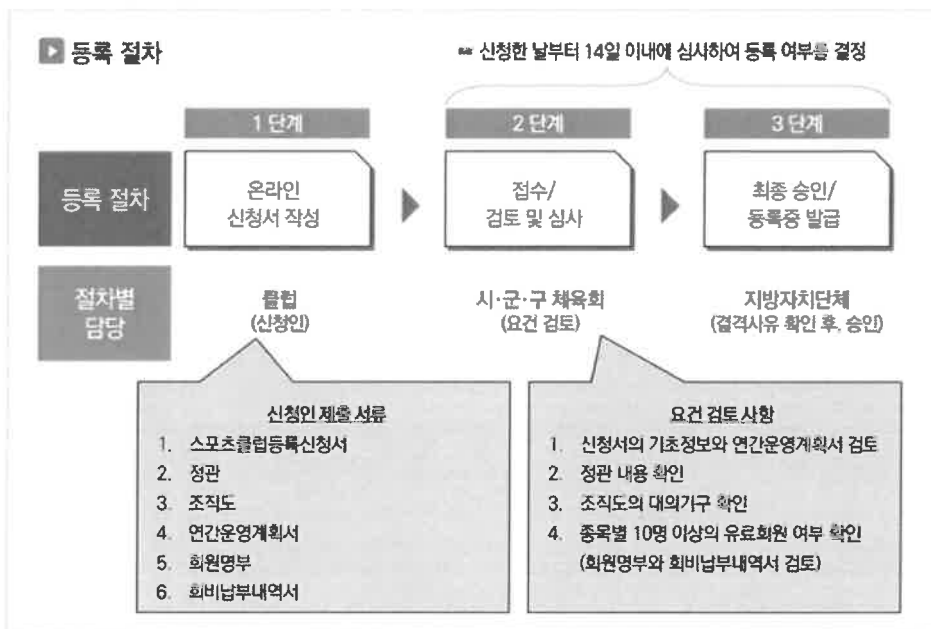
- 등록제도는 의무제가 아닌 자율 등록제이며,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체육활동 단체는 등록 가능함

*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스포츠클럽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규정

* 등록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 단위 클럽에는 등록증 교부

구분	등록클럽	지정클럽
대상	모든 체육활동 단체(법인 포함)	등록 스포츠클럽 中
최종권한	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한의 위임·위탁	지방체육회 (시·군·구체육회)	대한체육회
관련조항	스포츠클럽법 제6조	스포츠클럽법 제9조
신청주기	매월 14~16일(3일간)	연 1회

- (클럽 등록체계 구축)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단체로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스포츠클럽법」 제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함
 - 스포츠클럽법에 근거한 등록의 주체와 위임위탁 근거에 기반하여 효율적인 등록체계 및 등록 프로세스 마련함
 - 등록 절차는 3단계로 구분하여, '신청→검토→승인'으로 단계를 최소화함
 - 특별자치시·도지사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스포츠클럽 등록 주체이며, 해당 지역 내 시·군·구체육회가 등록 업무를 위임받아 접수된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등록 요건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승인을 요청함



- (클럽 등록 방법) 스포츠클럽 등록시스템(<https://sportsclub.sports.or.kr/reg>)을 통해 온라인 접수 진행
 - * 법 시행 이후 첫 등록이 시작되는 6월의 경우, 6.16.(목) ~ 6.24.(금)까지 신청서 접수
 - 스포츠클럽 등록을 위한 온라인 신청기간은 매월 14~16일(3일간)로 지정하여 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스포츠클럽 등록 신청기간	매월 14~16일 (3일간) · 단, 신청기간에 주말,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신청기간 연장 예) 14일이 금요일인 경우 18일(화)까지 신청가능
등록여부 결정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¹⁾에 따르며, 등록시스템에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제출서류 6가지를 첨부하여 신청함²⁾

1) 등록신청서: 부록1.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세부신청방법은 별지6. 스포츠클럽 등록시스템 사용방법 안내 참조



관련법령

스포츠클럽법

[시행 2022. 6. 16.][법률 제18252호, 2021. 6. 15., 제정]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단체로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을 것
2. 스포츠클럽 연간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대표자 및 스포츠클럽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
4.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를 상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유지할 것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스포츠클럽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3조(스포츠클럽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포츠클럽의 정관 및 조직도
2. 스포츠클럽 연간운영계획서(체육시설 사용계획과 종목별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3. 종목별 스포츠클럽회원 명부
4. 스포츠클럽회원의 회비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종목별로 10명을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포츠클럽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스포츠클럽 등록 요건

☛ (등록 요건) 스포츠클럽의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음



등록 요건

1.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을 것
2. 스포츠클럽 연간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대표자 및 스포츠클럽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
4.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를 상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³⁾ 이상으로 유지할 것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정관

- ☛ 스포츠클럽의 정관은 스포츠클럽 「별지3. 정관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클럽 현황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할 수 있음
- ☛ 세부적으로 제1장 총칙(명칭, 목적), 제2장 회원(자격, 권리 및 의무, 탈퇴), 제3장 임원(임원 종류 및 정수, 직무, 선출방법, 임기 및 해임), 제4장 총회(구성, 의결사항, 소집 등), 제5장 이사회(구성, 기능, 소집 등), 제6장 재정(회비, 기금조성 및 지출), 제7장 보칙,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모든 조항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 정관에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명칭 및 목적
 - 대의기구(이사회 또는 총회 등)에 대한 내용
 - 회원 관련사항(회비 포함)
- ☛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정관(또는 회칙)이 있는 경우 해당 정관(또는 회칙)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시 작성된 정관 제출 가능)

2) 조직도

- ☛ 조직도에는 대표자(회장 등) 및 스포츠클럽 회원의 대의기구(이사회, 총회 등)가 있어야 함
 -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목 프로그램을 조직도에 표기(한종목 or 다종목)




3) 연간운영계획서


- 연간운영계획서는 「별지4. 운영계획서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체육시설 사용계획과 종목별 운영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⁴⁾
- 세부운영계획은 스포츠클럽에서 운영중인 종목별로 작성하되 운영방법, 회원 수, 교육일정 및 교육프로그램, 지도자 현황, 대회 참가 계획, 체육시설 사용계획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담고 있어야 함 * 작성 가능 사항만 기재

4) 종목별 회원명부(회비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포함)

- 회원명부는 회원의 성명, 생년월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종목표기가 되어있어야 함
 - 회원명부의 회원에 대한 인정 여부는 제출한 회비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와 회원 명부를 비교·검토하여 연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운영 종목별로 10명 이상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결정
 - * 회비납부 증명서류: 회원명부, 회비납부현황(회비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금증 또는 통장사본 함께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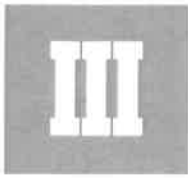

회원명부
예시

순번	종목	등록일	성명	생년월일	비고
1	농구	20**.**.**	김**	****.**.**	정회원
2	농구	20**.**.**	이**	****.**.**	준회원
3					
4					
5					
6					


회비
납부현황
예시

순번	성명	부년월일	가입일	가입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1	김**	2011.7.7	21.3.2	30,000	-	-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0
2	박**	2013.1.2	21.2.1	30,000	-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	-	540,000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 근거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스포츠클럽 등록 담당자별 업무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1. 스포츠클럽(신청인)

- ☞ (온라인 접수) 스포츠클럽 등록시스템(<https://sportsclub.sports.or.kr/reg>)을 통해 온라인 접수 진행
 - 등록시스템에서 등록신청서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그 외 첨부서류는 샘플서류를 확인할 수 있음
 - 제출서류 6종을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함

No.	제출서류	참고사항
1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별지1의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2	정관	별지3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정관 제출도 가능하며, 회칙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여 정관으로 제출 가능
3	조직도	대표자 및 대의기구가 조직도에 반영되어 있어야 함
4	연간운영계획서	별지4, 운영계획서 작성 예시 참고 - 체육시설 사용계획 및 종목별 운영계획 포함
5	회원명부	회원 성명, 생년월일, 종목이 표기된 회원 명부 서류
6	회비납부내역서	회비납부 증명서류(회원명부, 회비납부현황, 입금증 또는 통장 사본) - 연1회 이상 회비납부 회원 10명 이상 필수

- ☞ (신청 단계) 시스템을 활용한 신청 단계




- ☞ (신청서 접수 기간) 매월 14~16일(평일 기준 3일)
 - 접수 기간에 주말이나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부족한 평일 일수만큼 접수 기간이 연장됨
 - 신청 완료 후 내용 수정이 불가하므로 서류제출 시 주의할 것
 - ※ 법 시행이후 첫 등록이 시작되는 6월의 경우, 6.16.(목) ~ 6.24.(금)까지 신청서 접수
- ☞ (결과 확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시·군·구체육회가 신청인에게 결과 공지(이메일 공지)
- ☞ (재등록 신청) 신청결과 등록 불가 판정 시 등록 요건을 보완하여 다음 신청일에 등록 신청 가능

2. 지방체육회(시·군·구 체육회)

☞ (요건 검토)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방체육회의 등록스포츠클럽 업무 담당자*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요건 검토를 진행해야 함(접수 완료 후 7일 이내)

* 업무 담당자: '22년 6월부터 한시적으로 시군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1명 행정지도자로 추가 배치 가능('22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지침_문화체육관광부)

☞ (종목 범위) 종목은 다음의 82종목을 기준으로 하되, 그 외의 종목과 지방체육회 미가입 종목에 대한 등록 여부는 지방체육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함


종목 범위
(82종목)

코드	단체명 또는 종목명	코드	단체명 또는 종목명	코드	단체명 또는 종목명
AT	육 상	BM	배드민턴	OT	오리엔티어링
FB	축 구	RO	조 정	AS	항공스포츠
TE	테니스	RL	롤 러	RB	라켓볼
ST	소프트테니스	SA	요 트	BX	킥복싱
TT	탁 구	BW	볼 링	CK	크리켓
HB	핸드볼	AR	양 궁	AE	에어로빅합합
WE	역 도	CA	카 누	EL	이스포츠
BO	복 상	GO	골 프	CH	체 스
SK	빙 상	MP	근대5종	YM	용무도
JU	유 도	WS	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	FO	플로어볼
GY	체 조	AF	산 악	GB	게이트볼
CY	자전거	BD	보디빌딩	JG	족 구
BB	농 구	SE	세팍타크로	PL	패러글라이딩
VB	배 구	UW	수중_핀수영	KG	국학기공
SR	씨 림	WU	우 슈	GG	그라운드골프
RU	력 비	SB	소프트볼	PG	파크골프
WR	레슬링	LB	봅슬레이스켈레톤	JN	줄넘기
SW	수 영	CR	컬 링	FD	플라잉디스크
BA	야 구	TR	철인3종	DG	피 구
SI	스 키	BT	바이애슬론	PB	파워보트
ES	승 마	SQ	스쿼시	JJ	주짓수
IH	아이스하키	BI	당 구	HK	합기도
HO	하 키	TK	택 건	KU	크라쉬
KD	검 도	KR	가라테	BR	브리지
NA	궁 도	DS	댄스스포츠	SF	서 핑
SH	사 격	LG	루 지	HG	한 궁
FE	펜 싱	BU	바 득		
TA	태권도	KB	카바디		

※ 그 외의 종목은 지방체육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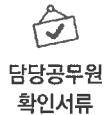
☞ (등록 요건) 제출서류가 아래의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

- 1)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을 것
- 2) 조직도에 대표자 및 스포츠클럽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
- 3) 스포츠클럽 연간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계획서 내에 체육시설 사용계획과 종목별 운영계획을 포함하고 있을 것
- 4) 연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가 종목별로 10명 이상일 것

- (등록 결정)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스포츠클럽의 신청서류는 압축하여 시·군·구 담당공무원에게 발송함(접수 완료 후 7일 이내)
 - 다종목 클럽의 경우, 요건에 부합하는 종목이 신청 종목 중 일부인 경우 요건에 부합한 종목만 등록접수 하고, 부합하지 않는 종목은 반려할 수 있음
 - 이 경우, 신청인에게 등록 불가 종목에 대한 고지를 해야 하며, 지방체육회 담당자는 부합 종목만 지방자치 단체에 승인 요청 함
- (등록 불가) 등록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스포츠클럽의 경우 신청인에게 부적격 사유를 이메일로 안내하고 시스템에서 등록불가 처리함(접수 완료 후 14일 이내)

3.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담당공무원)

- (등록 승인) 지방체육회로부터 1차 심사를 통과한 스포츠클럽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스포츠클럽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스포츠클럽법 제6조제3항).
 - 지방체육회에서 일차적으로 요건 심사를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최종점검 차원에서 요건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승인 후 스포츠클럽 등록증과 함께 승인 통보함



1. 정관 및 조직도
2. 연간운영계획서(체육시설 사용계획, 종목별 운영계획 포함)
3. 종목별 스포츠클럽회원 명부(회비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포함)
 - 연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을 운영 종목별 10명 이상 유지여부

- (등록증 발급) 신청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증을 발급하며, 스포츠클럽 등록증은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별지2. 스포츠클럽 등록증 서식에 따름
 - 등록증은 클럽별로 1개를 발급하며, 다종목형은 운영 종목란에 종목명을 모두 기입하여 발급함



관련법령

스포츠클럽법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52호, 2021. 6. 15., 제정]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스포츠클럽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3조(스포츠클럽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2조(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등)

- 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IV

스포츠클럽 등록 취소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 (등록 취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스포츠클럽에 등록한 것을 확인하게 된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함(스포츠클럽법 제7조 제1항)
- ☞ (보완 명령) 또한, 등록된 스포츠클럽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스포츠클럽법 제7조 제2항)
- ☞ (취소 절차) 스포츠클럽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해야 함(스포츠클럽법 제7조 제3항)



관련법령

스포츠클럽법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52호, 2021. 6. 15., 제정]

- 제7조(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스포츠클럽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V

스포츠클럽 변경 신고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변경신고) 「스포츠클럽법」 제6조의 따라 등록된 스포츠클럽은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함(스포츠클럽법 제6조 제1항)
- (신고서 제출) 스포츠클럽 등록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와 그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스포츠클럽 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3조)
- (변경신고서) 변경신고서는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따름

※ 변경 신고등록은 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며, 클럽에서 변경 사항을 지방체육회에 변경 신청하고, 지방체육회는 변경서류를 검토 확인 후 지방자치단체 제출 후 지방자치단체는 변경된 등록증 발급



관련법령

스포츠클럽법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52호, 2021. 6. 15., 제정]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단체로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3조(스포츠클럽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스포츠클럽 등록변경신고서와 그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스포츠클럽 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VI

스포츠클럽 사용료 감면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스포츠클럽법」 제15조에 따라, 등록·지정스포츠클럽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가능
 - 감면 범위는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등록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음(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관련법령

스포츠클럽법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52호, 2021. 6. 15., 제정]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협조사항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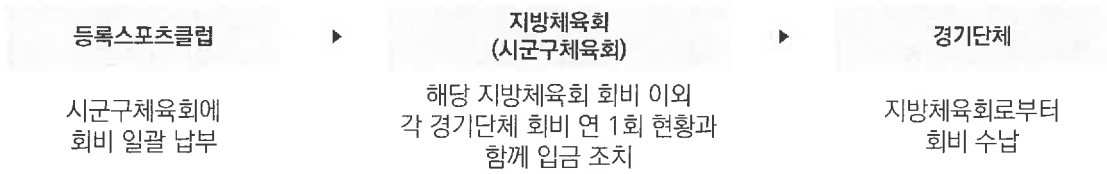
1. 스포츠클럽 회비 납부

☞ (관련근거) 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체육회 및 경기단체 회원으로서, 체육단체가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단체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함

* 지방체육회: 시·군·구체육회

** 경기단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로,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

☞ (회비납부 절차)



☞ (정관개정)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라 2022.6.16. 이후 등록한 스포츠클럽의 회비는 각각의 체육단체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받을 수 있음

- 회비를 받고자 하는 체육단체는 정관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경우에 한하여 회비수납 가능



관련법령

스포츠클럽법

[시행 2022. 6. 16.][법률 제18252호, 2021. 6. 15., 제정]

제8조(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 ① 스포츠클럽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이 조에서 "체육단체"라 한다)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체육단체가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단체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육단체는 스포츠클럽이 납부한 회비 및 회비의 사용 내역을 제18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에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2. 조례 제정 및 운영

- ❖ (관련근거) 「스포츠클럽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기존현황)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스포츠클럽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기존조례의 개정 또는 조례의 신설을 추진하여야 함
 - ① 스포츠클럽 관련 조례가 있는 경우: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조례로 개정 추진
 - * 해당 조례들은 대부분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제정된 조례들임
 - ② 스포츠클럽 관련 조례가 없는 경우: 스포츠클럽 진흥조례 제정 추진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 제·개정 시 반영 필요 조항		
용어의 정의	지원 및 범위	지도·감독
스포츠클럽 정의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스포츠클럽, 회원 등 정의)	인적지원, 공간지원, 재정지원, 기타 지원(사업지원 등)	스포츠클럽의 등록관련업무 등록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감독

- ❖ 조례는 「별지6. 조례 양식」을 참고하여 제정하되,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의 범위와 스포츠클럽 등록 신청 시 수수료를 포함함
 - 사용료 감면 범위와 등록 수수료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을 통해 규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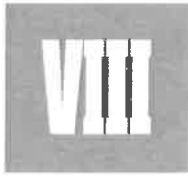


관련법령

스포츠클럽법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52호, 2021. 6. 15, 제정]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참고 사항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스포츠클럽법」제18조제1항에 근거하여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하며, 등록 업무를 비롯해 스포츠클럽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장 추진
 - 2023년 시스템 구축 예산확보를 시작으로 5개년 간 단계적 구축 추진
- (종합정보시스템 활용)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①국민들이 지역 내 클럽에 대한 소개와 홍보를 접함으로써 스포츠클럽에 참여하고 ②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스포츠클럽에 대한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마련함

활용 범위	활용 방안
1. 클럽 소개 및 홍보	- 스포츠클럽 소개, 클럽 등록캠페인 전개, 클럽 단위 홍보
2. 각종 클럽 통계 정보 제공	- 전국 단위 클럽의 각종 정보에 따른 통계 정보 제공 - 클럽 등록 및 지원 등의 서류 제공 및 활용 - 클럽 운영과 지원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
2. 클럽 공시 제공	- 클럽 등록증 교부(온라인), 클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 (기본 정보, 조직 정보, 활동 정보, 수익 정보 등)
3. 클럽 지원 대응	-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 내역 확인

- (타 시스템과의 연계체계 구축) 향후 체육인 등록시스템과 기존 공공스포츠클럽 전산시스템, 대회리그 시스템 등과 단계적 연계 추진

연계 시스템	시스템	연계 체계
1. 체육인 등록시스템	대한체육회 전산시스템	체육회 동호인/선수 등록과 연계, 클럽 회원 정보 제공
2. 스포츠클럽 시스템		기존 공공스포츠클럽 전산시스템과 통합 추진
3. 대회리그 시스템	시도 단위 시스템	등록 선수 및 등록동호인 대상 대회리그 출전 및 출전 결과 공시 연계
4. 교육관리 시스템	대한체육회 전산시스템	스포츠클럽 대상 온라인 동영상 공유

별지 1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대표자)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법인·단체명	④ 전화번호	
	⑤ 소재지	⑥ 설립 연월일	
	⑦ 사용시설	⑧ 기숙사 운영여부 유[] / 무[] - 기숙사 사용인원 : 명	
	⑨ 운영종목		
신청 법인·단체	⑩ 회원현황: 총 회원 명	여성회원 명	
		청소년회원 명	

「스포츠클럽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및 조직도 2. 연간운영계획서(체육시설 사용계획과 종목별 운영계획을 포함합니다) 3. 종목별 스포츠클럽회원 명부 4. 스포츠클럽회원의 회비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5. 스포츠클럽회원의 현황(운영 종목별 10명 이상의 유료회원 여부)	수수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

유의사항

1. 대표자, 법인·단체명, 운영종목, 회원현황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2. 청소년회원이란 만 19세 미만인 회원을 의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확인	▶	등록 수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체육회)		처리기관 (시·군·구 체육회)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2 스포츠클럽 등록증

■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스포츠클럽 등록증

1. 법인·단체명: (설립 연월일:)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사용시설:

5. 운영 종목:

「스포츠클럽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

직인

별지 3 정관(안) 예시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OOOO'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이 단체의 소재지는 OO시(도) OO시·군·구에 둔다.

제3조(목적) 이 단체는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이 단체의 회원은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 ① 회원은 이 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회원은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6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탈퇴신고를 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②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단체는 회장 1인, 회장을 포함한 이사 ○~○명을 둔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및 해임) ① 임원의 임기는 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4장 총 회

제11조(구 성)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의결사항)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의 승인
5. 회원의 제명결정 승인
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3조(소 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② 총회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총회의 의사표결은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최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제15조(구 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6조(소 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③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그 소집 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이사회 의사는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 정

제18조(수입금)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19조(회 비) ① 회비는 월 O만원으로 한다.

- ② 회비 납부기한은 OO일로 한다.

제7장 보 칙

제20조(예산) 이 단체는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제21조(정관 변경) 정관변경은 총회의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4 스포츠클럽 운영계획서 작성 예시

스포츠클럽 운영계획서

1. 운영목적

- 목 적
-

2. 운영개요

- 단체창립일 : 20XX. XX. XX
- 운영장소 : ○○시/도 일원(○○, ○○, ○○)
- 참가대상 : 등록 회원(○○시/도민)
- 운영규모
종목명1, 종목명2, 종목명3...

3. 세부운영계획

* 종목별 운영방법, 참가자 모집 및 현재 회원 수, 교육일정 및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해당사항만 기재)

가. 000 종목 운영계획

- 운영특성(해당사항 모두체크)

활동영역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input type="checkbox"/> 학교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활동유형	<input type="checkbox"/> 경기형	<input type="checkbox"/> 야외활동형	<input type="checkbox"/> 체력단련형			
활동대상	<input type="checkbox"/> 유아동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input type="checkbox"/> 성인	<input type="checkbox"/> 노인	<input type="checkbox"/> 여성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 회원 모집방법 및 현재 회원 수

- 회원 모집방법

- 연도별 회원 수

	2020년 말	2021년 말	2022년(현재)
회원 수	명	명	명

○ 교육일정 및 교육프로그램
(예시)

종목	운영반	운영시간	회비	장소
000	평일오전반	00:00~00:00	주2회 XXX,000원 주3회 XXX,000원	
	평일저녁반	00:00~00:00	주5회 XXX,000원	
	주말반	00:00~00:00	월4회 XXX,000원	

- 지도자 구성 및 자격사항
- 성명: ○○○(○○종목 지도자)
 - ○급 ○○스포츠지도사

○ 대회 참가 계획

-

○ 체육시설 사용계획(필수)

-

(예시)

종 목	장 소	주 소	내 용	비고
000	XXX공원	00구 00동	· 일부 시간대 무료사용 · 단일체육시설	
	△△△체육관	00구 00동	· 평일 10:00~16:00 무료사용 · 단일체육시설	

별지 5 조례(안) 예시

○○광역시 ○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XX. 00. 00.] [○○광역시○구조례 제0000호, 20XX. 00. 00., 제정]

○○광역시 ○구(체육진흥팀), 000-000-000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광역시 ○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광역시 ○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광역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전부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80퍼센트 감경
- ※ 감면의 상한선을 제시한 것으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도·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4항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XX.0.0. 조례 제0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XX. 0. 0.] [○○도○○시조례 제0000호, 20XX. 0. 0., 제정]

○○도 ○○시(생활체육과), 000-000-000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전부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80퍼센트 감경
- ※ 감면의 상한선을 제시한 것으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환수) ① 시장은 제6조의 지도·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4항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XX.0.0. 조례 제0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X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등록 페이지

1. 서비스 개요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서비스 구성도
4. 이용 가이드
5. 추진일정
6. 시연

1

서비스 개요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에 따라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을 실시합니다.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등록 페이지 개발 〉

스포츠클럽법 제정(2021.6.15. 법률 제18252호 / 시행 2022.6.16.)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스포츠클럽 등록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지원

추진목표

- 1 스포츠클럽
등록페이지 개발
- 2 등록관리 및
관련 업무 지원
- 3 각종 보고자료 및
통계자료 처리 지원

추진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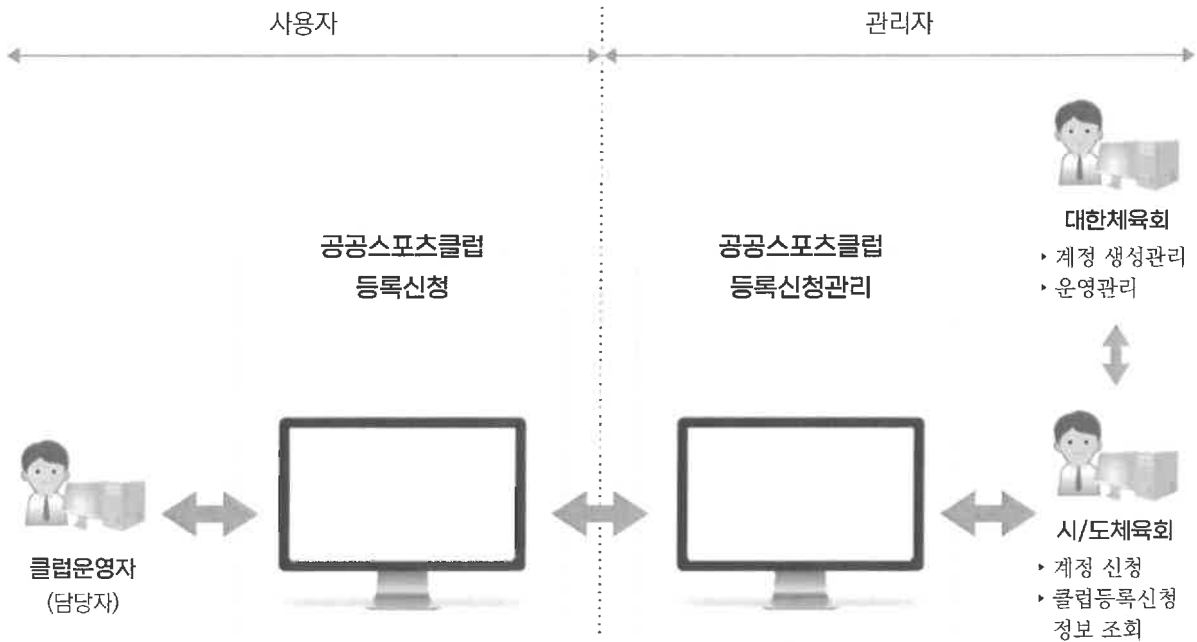
- (스포츠클럽법 시행(2022.6.16)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등록페이지 개발 필요
-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관리 필요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대비, 데이터 관리
기반 체계 필요

3

서비스 구성도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을 통한 관리업무 기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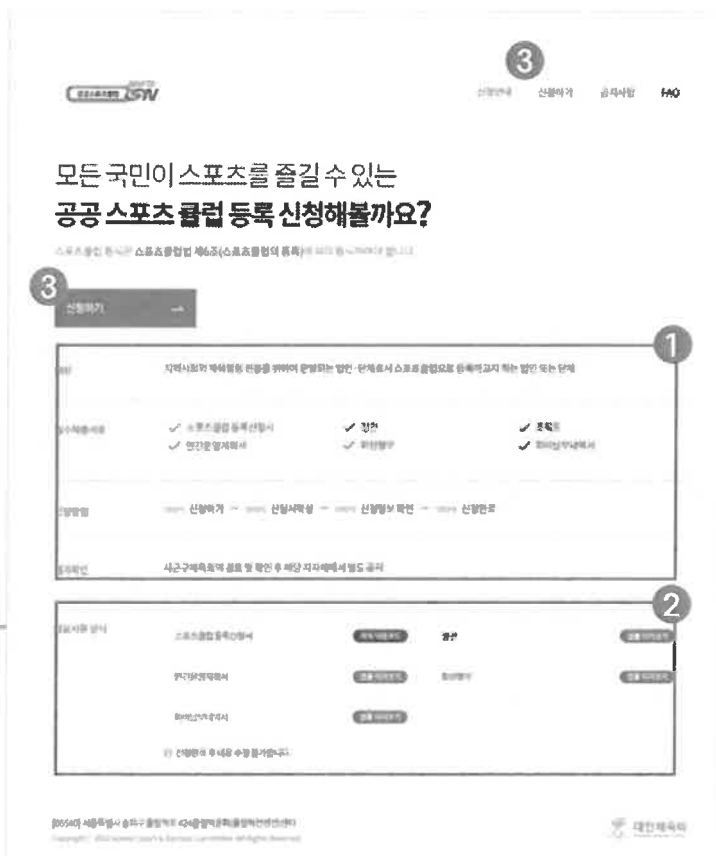
4

이용 가이드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클럽운영자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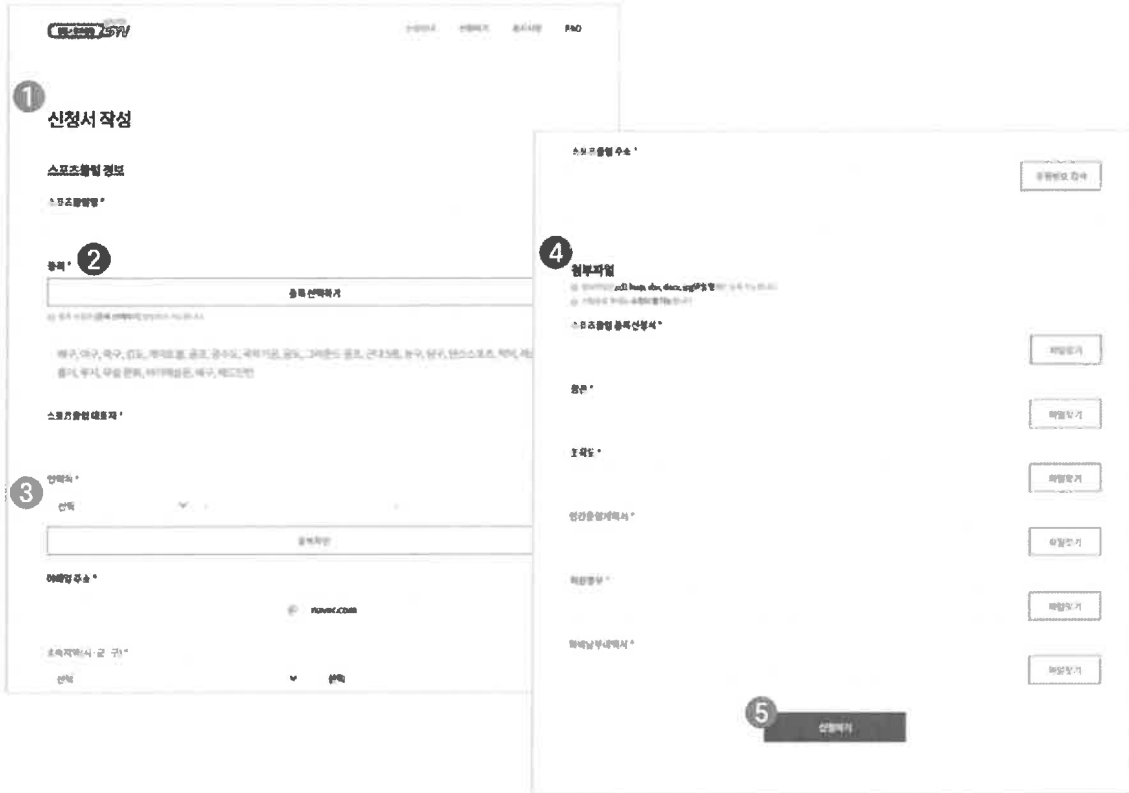
신청 안내



상세 설명

- ① 스포츠클럽 등록신청 안내
 - 등록대상, 필수제출서류, 신청방법, 결과안내
- ② 제출서류 안내
 -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 정관
 - 연간운영계획서
 - 회원명부
 - 회비납부내역서
- ③ 스포츠클럽 등록신청
 - 상단 메뉴 또는 배너 클릭

[클럽운영자 매뉴얼] 신청서 작성 및 신청등록



상세 설명

① 스포츠클럽 기본정보

- 스포츠클럽명
- 종목 선택
- 대표자명
- 연락처(휴대전화)
- 이메일
- 시도/시군구 선택
- 스포츠클럽 주소

② 종목 선택

- 종목선택 팝업 표시

③ 등록신청 중복확인

- 연락처(휴대전화) 기준으로 확인

④ 첨부파일 등록

-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 정관
- 조직도
- 연간운영계획서
- 회원명부
- 회비납부내역서

⑤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 첨부파일은 pdf, hwp, xlsx, docx, jpg파일 형식만 등록 가능합니다.
- ▶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클럽운영자 매뉴얼] 스포츠클럽 종목 선택



상세 설명

- ① 스포츠클럽 종목선택
 - 5개 분야로 구분된 종목을 선택
 - 다중 선택 가능
- ② 스포츠클럽 종목 수기 등록
 - 종목이 예시에 없을 경우 직접 등록 가능
 - 종목은 쉼표(,)로 구분해서 등록
- ③ 종목선택 완료 후 '선택완료' 버튼 클릭

[클럽운영자 매뉴얼] 공지사항



상세설명

- ① 공지사항 목록 조회
- ② 공지사항 상세내용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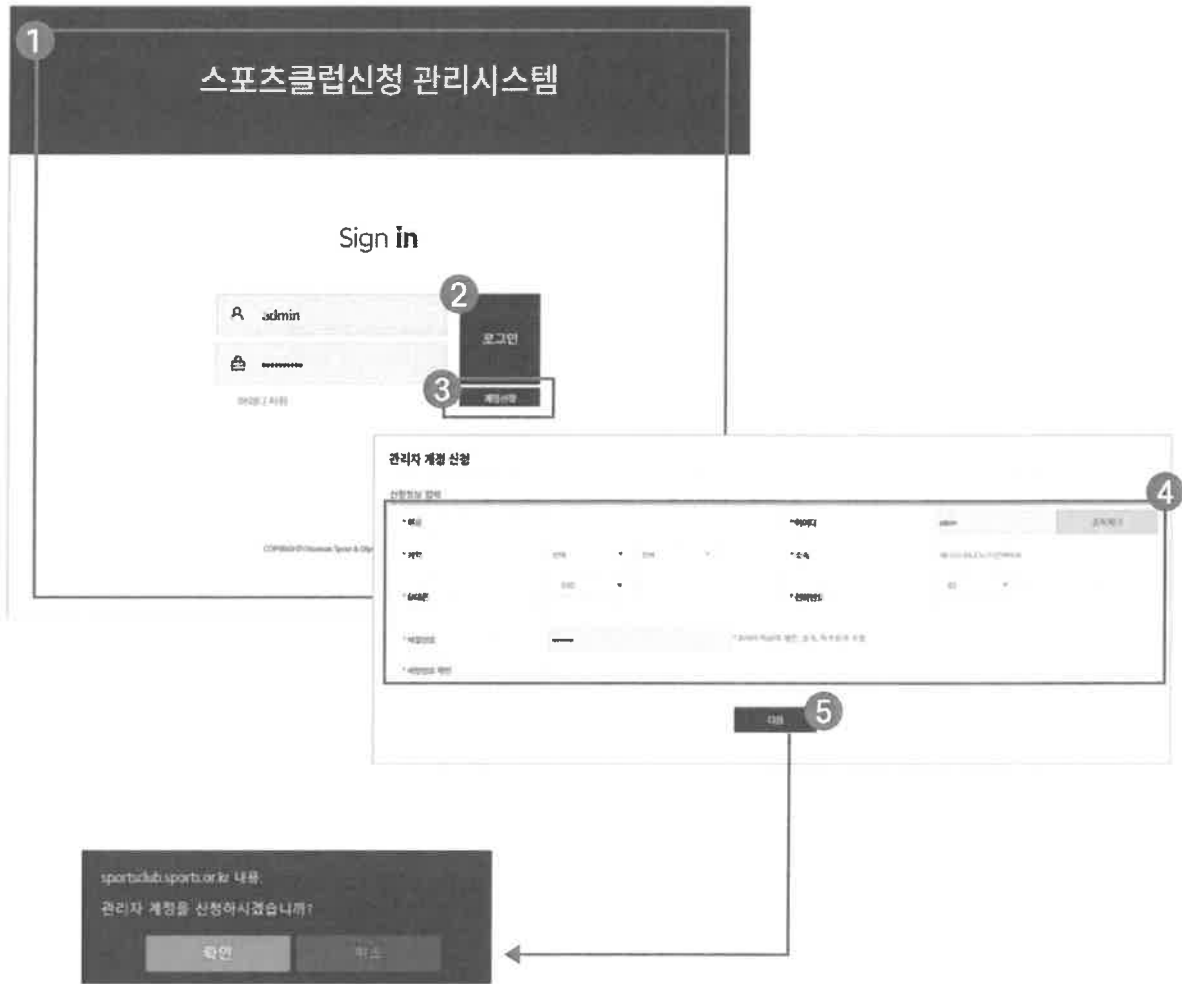
[클럽운영자 매뉴얼] 자주하는 질문



상세설명

- ① 자주하는 질문 목록 조회
- ② 질문과 답변 내용 조회

[클럽운영자 매뉴얼] 계정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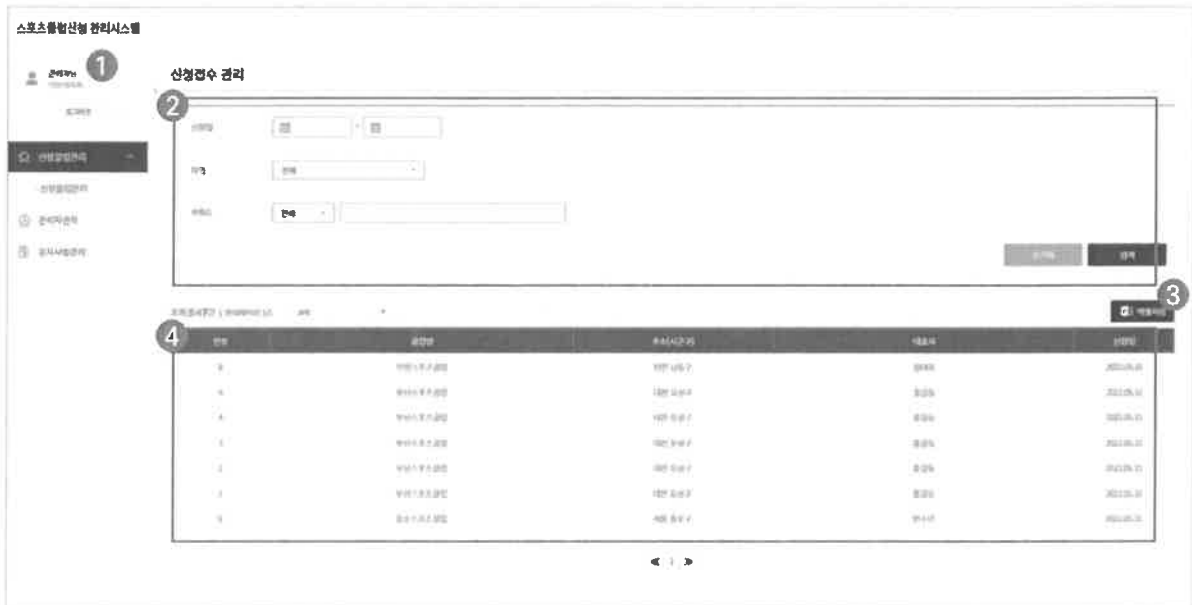


상세 설명

- ① 스포츠클럽 등록관리 접속
URL: <https://sportsclub.sports.or.kr/rmng/>
- ② 스포츠클럽 관리자 로그인
- ③ 시/도 체육회 관리자 계정신청
- ④ 계정신청서 등록
* 비밀번호는 8자리 이상의 영문, 숫자, 특수문자 조합
- ⑤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완료
- 대한체육회 관리자 승인 후 이용 가능

[등록관리자 매뉴얼]

스포츠클럽 등록신청 접수 목록 및 조회



상세설명

- ① 로그인 한 사용자 정보
- ② 스포츠클럽 등록신청 정보 조회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버튼 클릭
- ③ 조회결과 엑셀파일 저장
- ④ 스포츠클럽 등록신청 내역
 - 소속 시도 신청정보만 조회 가능

[클럽운영자 매뉴얼]

스포츠클럽 등록신청 접수 상세내용 조회

1 신청접수 관리

발송 상세정보

클럽명	인천스포츠클럽	종목	축구
클럽대표자명	김대표	연락처	010-1111-2222
이메일	boy@ms.co.kr		
소속지역(시,군,구)	인천 남동구		
스포츠클럽 주소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구월동)		

2 필수제출서류

기타	스포츠클럽 cms 게시물관리 및 회원관리.pdf
기타	사용자 설명서(대한체육회 운영 관리, 대한체육회 실적 관리) 통합본 02.pdf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스포츠클럽등록신청서.hwp
정관	정관.hwp
조직도	sports_char1.jpg
연간운영계획서	연간운영계획서.doc
회원명부	회원명부.xlsx
회비납부내역서	회비납부내역서.xlsx

3 목록



상세설명

- ① 등록신청 한 스포츠클럽의 기본정보
 - 스포츠클럽명, 종목, 대표자, 연락처 등
- ②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
 -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 정관
 - 조직도
 - 연간운영계획서
 - 회원명부
 - 회비납부내역서
- ③ 스포츠클럽 등록신청 목록 돌아가기

[등록관리자 매뉴얼] 공지사항 목록 및 조회

스포츠클럽신청 관리시스템

관리자님
대안체육회
02099

신청통합관리
관리자관리
공지사항관리

공지사항관리

게시판

1

종속할: [] - []
 구분: [단명]
 검색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2 조회결과 3건

<input type="checkbox"/>	번호	제목	첨가일자	등록일	작성시	조회수
<input type="checkbox"/>	공지	스포츠클럽 등록신청 시 주의사항		2022-05-31	대안체육회	13
<input type="checkbox"/>	3	스포츠클럽 등록신청 시 필수서류 안내		2022-05-31	서울시립로 74 육원	2
<input type="checkbox"/>	0	스포츠클럽 등록해제안내		2022-05-31	스포츠클럽	9

3 삭제

4 등록

« < 1 > »



상세설명

- ① 공지사항 정보 조회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버튼 클릭
- ② 조회결과 목록 출력
- ③ 게시글 삭제
- 목록의 게시글을 선택하여 '삭제' 버튼 클릭
- ④ 공지사항 게시글 작성
- 게시글 작성을 위해 '등록' 버튼 클릭

[등록관리자 매뉴얼] 공지사항 게시물 작성

게시판

1

제목

상단공지

부동적성일

작성지

첨부파일

첨부파일 추가 2

등록

최종수정

취소

등록 3

보기



상세설명

- ① 게시물 기본정보 및 내용입력
- ② 첨부파일 추가
 - 여러 개의 첨부파일을 추가
- ③ 게시물 등록하기
 - '등록' 버튼 클릭 시 작성된 글이 게시

5

추진 일정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기간	4월	5월	6월	...	12월
구분	시스템 구축	서비스 가동 및 운영			
등록페이지 개발	페이지 개발		시험 운영	OPEN	
스포츠클럽				6. 16 등록신청 시작	
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전사적 기술 지원	

6

시연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클럽운영자]
스포츠클럽 등록신청



[등록관리자]
스포츠클럽 등록신청관리

